

『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김인배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구미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예산, 의무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(안 제3조)
-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 시기를 협약 체결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안 제4조)
- 의안의 형식은 동의안으로 하며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시장이 서면으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는 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함(안 제6조~안 제8조)
-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소관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(안 제9조~ 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8호, 제4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에서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구미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, 시의 처리사무 적용범위(안 제3조), 의안 제출시기(안 제4조), 협약체결(안 제5조), 위원회 설치·운영 등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적용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무의 통일적,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 사전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현재 포항시, 광양시 등 16개 시·군 조례 제정